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6. 2.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5년 6월 16일, 김위상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2025년 6월 17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6차 전체회의(2025.11.14.)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2026.2.4.) 상정, 축조심
사, 의결(수정가결)

제1차 전체회의(2026.2.6.)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수
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김위상의원)

현행법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환각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소지 및 판매·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환각물질 관련 정보에 관한 표시·광고나 온라인 게시물에 대한 규제 조항이 없어 환각물질 오·남용 방지를 위한 단속 및 후속조치가 어려운 상황임.

이에 환각물질 또는 환각물질이 포함된 제품의 사용방법이나 내용에 관한 표시·광고 혹은 온라인 게시물에 대한 심의·삭제 근거와 모니터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2조제3항 및 제4항 등).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신향진)

개정안은 환각물질 또는 환각물질이 포함된 제품을 흥분·환각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정보를 표시·광고하거나 온라인에 게시하는 것을 금지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이러한 정보의 표시·광고나 정보통신망 게시 여부를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환각물질 또는 환각물질이 포함된 제품을 흥분·환각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정보를 표시·광고하거나 온라인에 게시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근

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3항·제4항 및 제62조제3호의2).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2조(환각물질의 흡입 등의 금지) ①·② (생략) <u><신설></u>	제22조(환각물질의 흡입 등의 금지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누구든지 환각물질 또는 환각물질이 포함된 제품을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 혹은 방법에 관한 정보를 표시·광고하거나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게시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환각물질 사용에 따른 부작용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거나 의료 목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항에 해당하는 정보의 표시·광고나 정보통신망 게시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을 위반한 표시·광고한 자에 대하여 폐기·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거나 게시물의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u><신설></u>	
제6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제62조(벌칙) -----

현행	개정안
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3. (생략) <u><신설></u> 4. (생략)	----- ----- · 1. ~ 3. (현행과 같음) 3의2.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환각물질 또는 환각물질이 포함된 제품을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 혹은 방법에 관한 정보를 표시·광고하거나 정보통신망에 게시한 자 4. (현행과 같음)

현행법은 환각물질을 섭취·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는 것과, 환각물질을 섭취하거나 흡입하려는 사람에게 그 사실을 알면서도 판매·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¹⁾,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²⁾하고 있음.

환각물질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 톨루엔, 초산에틸 또는 메틸알코올, 부탄가스, 아산화질소 등이 이에 해당함.

- 1)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환각물질의 흡입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하 “환각물질”이라 한다)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누구든지 환각물질을 섭취하거나 흡입하려는 사람에게 그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2)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제22조를 위반하여 환각물질을 섭취·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한 자 또는 환각물질을 섭취하거나 흡입하려는 자에게 그 사실을 알면서 이를 판매 또는 제공한 자

[환각물질의 종류(시행령 제11조)]

-
1. 톨루엔, 초산에틸 또는 메틸알코올
 2. 제1호의 물질이 들어 있는 시너(도료의 점도 감소를 위해 사용되는 유기용제), 접착제, 풍선류 또는 도료
 3. 부탄가스
 4. 아산화질소(의료용 제외)
-

현행법에는 환각물질 정보의 표시·광고, 온라인 게시에 관한 금지 규정이 부재하여 환각물질 오·남용 방지를 위한 사전적 단속 및 그 후속조치에 한계가 있는바,

개정안은 환각물질 오·남용 정보의 확산을 자제함으로써 환각물질의 불법유통 확산에 대한 사전적인 차단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임.

개정안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첫째, 환각물질 정보 표시·광고 및 온라인 게시 행위의 금지 규정 신설과 관련하여,

개정안은 표시·광고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내용을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오·남용 관련 내용으로 한정하고 있고, 환각물질 사용에 따른 부작용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나 의료 목적인 경우에는 표시·광고 또는 게시를 금지하고 있지 않으므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한이라 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타당하다고 보여짐.

둘째, 환각물질 정보 표시·광고 및 온라인 게시 행위에 대한 조사 및 관계기관에의 협조 요청 근거 규정 신설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환각물질 정보의 표시·광고 및 게시물에 대해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보여짐.

특히 환각물질에 관한 정보는 주로 인터넷 등의 정보통신망을 통해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확산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온라인 게시물을 신속하게 심의·삭제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³⁾ 등 관계기관과 원활히 협조할 필요가 있음.

셋째, 개정안은 환각물질 정보를 표시·광고 하거나 온라인에 게시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금지 규정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제재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가 타당하다고 보여지고,

벌칙의 수준은 현행법에서 규정하는 벌칙 중 가장 가벼운 수준이며, 개정안의 내용과 규범목적 및 행위유형이 유사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오·남용 목적의 정보 제공 행위에 대하여 3년 이하의

3)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방송 내용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고 정보통신에서의 건전한 문화를 창달하며 정보통신의 올바른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독립적으로 사무를 수행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1조(심의위원회의 직무) 심의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송법」 제32조에 규정된 사항의 심의
2. 「방송법」 제100조에 따른 제재조치 등에 대한 심의·의결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에 규정된 사항의 심의
4.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의 심의 및 시정요구
5. 전기통신회선을 이용하여 유통되는 정보의 건전화에 관한 사항
6. 정보통신의 올바른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7. 심의위원회의 사업계획·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8. 심의위원회 규칙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9. 다른 법령에 의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한 사항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⁴⁾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벌칙의 수준은 과하지 않은 범위 내로 보임.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환각물질의 표시·광고 및 게시 금지는 불법유통과 확산에 대한 사전적인 차단에 효과적이므로 찬성하는 입장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김형동)

수정가결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일반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정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 다만, 마약류 오남용 예방교육 등 공익적 목적인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마약류의 사용, 마약 원료 식물 제배, 소유, 관리, 수출입 등)

나. 제4조제1항(마약의 소지, 사용, 수출, 조제, 매매, 매매 권유·알선 등) 또는 제3항(마약 취급)

다. 제5조제1항(마약의 업무외사용) 또는 제2항(임시마약의 업무외사용)

라. 제5조의2제5항(예고임시마약류 또는 임시마약류의 소유, 사용, 투약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3조제12호를 위반하여 금지되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알리거나 제시한 자(예고임시마약류에 대해서는 제외한다)

7. 심사결과

수정가결

8.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내용

체계·자구심사를 거쳤음.

※ 심사보고서 붙임서류:

1.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2.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6. 2.

제안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수정이유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환경부가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되었으므로 이를 반영하는 등 용어를 정비하고, 조문 구성의 명확성을 위해 가지조문을 수정하려는 것임.

수정주요내용

- 가. 개정된 정부조직법에 따라 ‘환경부령’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조정하는 등 용어를 정비함(안 제22조제4항).
- 나. 가지조문 제3호의2를 제4호로 수정함(안 제62조).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2조제4항 전단 중 “환경부장관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으로 한다.

안 제62조제3호의2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환각물질 또는 환각물질이 포함된 제품을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 혹은 방법에 관한 정보를 표시·광고하거나 정보통신망에 게시한 자

수정안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22조(환각물질의 흡입 등의 금지) ① · ② (생략) <u><신설></u>	제22조(환각물질의 흡입 등의 금지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u>누구든지 환각물질 또는 환각물질이 포함된 제품을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 혹은 방법에 관한 정보를 표시·광고하거나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게시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환각물질 사용에 따른 부작용</u>	제22조(환각물질의 흡입 등의 금지 등) ① ~ ③ (개정안과 같음)

<신 설>

제6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

의 발생을 방지하
기 위한 목적이거
나 의료 목적인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항에 해당하는 정보의 표시·광고나 정보통신망 게시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을 위반한 표시·광고한 자에 대하여 폐기·철회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거나 게시물의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제62조(벌칙) -----

④ 기후에너지환경
부장관은-----

제62조(벌칙) -----

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3. (생략)

<신설>

-----.

1. ~ 3. (현행과 같음)

3의2. 제22조제3항

을 위반하여 환

각물질 또는 환

각물질이 포함된

제품을 흥분·환

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

혹은 방법에 관

한 정보를 표시

· 광고하거나 정

보통신망에 게시

한 자

<신설>

-----.

1. ~ 3. (개정안과 같음)

<삭제>

4.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환각물

질 또는 환각물

질이 포함된 제

품을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

용을 일으킬 목

적으로 사용할

4. (생략)	<u>4.</u> (현행과 같음)	<u>수 있다는 내용</u> <u>혹은 방법에 관</u> <u>한 정보를 표시</u> <u>· 광고하거나 정</u> <u>보통신망에 게시</u> <u>한 자</u> <u>5.</u> (개정안 제4호와 같음)
---------	--------------------	--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화학물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 제목 중 “금지”를 “금지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누구든지 환각물질 또는 환각물질이 포함된 제품을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 혹은 방법에 관한 정보를 표시·광고하거나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게시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환각물질 사용에 따른 부작용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거나 의료 목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항에 해당하는 정보의 표시·광고나 정보통신망 게시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을 위반하여 표시·광고한 자에게 폐기·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거나 게시물의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제59조제6호 중 “제22조를”을 “제22조제1항을”로, “소지한 자 또는”을 “소지한 자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로 한다.

제62조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환각물질 또는 환각물질이 포함된 제품을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 혹은 방법에 관한 정보를 표시·광고하거나 정보통신망에 게시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2조(환각물질의 흡입 등의 금지) ① · ② (생략) <u><신설></u>	제22조(환각물질의 흡입 등의 금지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u>누구든지 환각물질 또는 환각물질이 포함된 제품을 흥분 · 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 혹은 방법에 관한 정보를 표시 · 광고하거나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게시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환각물질 사용에 따른 부작용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거나 의료 목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④ <u>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항에 해당하는 정보의 표시 · 광고나 정보통신망 게시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을 위반하여 표시 · 광고</u>
<u><신설></u>	

제5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5. (생략)

6. 제22조를 위반하여 환각물질을 섭취·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한 자 또는 환각물질을 섭취하거나 흡입하려는 자에게 그 사실을 알면서 이를 판매 또는 제공한 자

7. ~ 12. (생략)

제6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5. (생략)

<신설>

한 자에게 폐기·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거나 게시물의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제59조(벌칙) -----

-----.

1. ~ 5. (생략)

6. 제22조제1항을 -----

----- 소지한 자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

7. ~ 12. (생략)

제62조(벌칙) -----

-----.

1. ~ 3. (현행과 같음)

4.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환각물질 또는 환각물질이 포함된 제품을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 혹

<u>4.</u> (생략)	<u>은 방법에 관한 정보를 표시</u> <u>· 광고하거나 정보통신망에</u> <u>게시한 자</u> <u>5.</u> (현행 제4호와 같음)
-----------------------	--